

인천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2가단2356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, 모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1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7. 5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7. 5. 29. 접수 제993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남효정

별지